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31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상정	소위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3554	남인순의원	2024. 9. 3.	상정	2024. 11. 14.
				소위심사	2025. 2. 20.
					2026. 2. 27.
					2026. 3. 12.
	2206547	소병훈의원	2024. 12. 17.	상정	2025. 2. 18.
				소위심사	2026. 3. 12.
	2210967	서영석의원	2025. 6. 20.	상정	2025. 8. 18.
				소위심사	2026. 2. 27.
					2026. 3. 12.
	2211156	남인순의원	2025. 6. 30.	상정	2025. 8. 18.
				소위심사	2026. 2. 27. 2026. 3. 12.
	2211630	이수진의원	2025. 7. 22.	상정	2025. 9. 22.
소위심사				2026. 2. 27. 2026. 3. 12.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2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2. 27.) 및 제433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국회(임사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으로써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

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안 제115조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

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로, “징수하거나 환수할”을 “징수할”로, “등의 권리는”을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u> <u>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u> <u>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u> <u>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u> <u>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u> <u>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u> <u>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u> <u>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본문</u> <u>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u> <u>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u> <u>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u> <u>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u> <u>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u> <u>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같음하여</u> <u>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u> <u>에 추가로 산입한다.</u></p> <p><u>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u> <u>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u> <u>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u> <u>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u> <u>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u></p>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
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
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
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
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
니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
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
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
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
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
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

<p>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u>소멸시</u> <u>효가 완성된다.</u> ② ~ ⑤ (생략)</p>	<p>-----<u>시효의</u> <u>완성으로 소멸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p>
--	---